2025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5년 1월 ~ 12월

○ **참여기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기업에 최대 550만원 지원

※ 신규채용 근로자만 신청가능, 사업신청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경우 신청불가

1) 참여기업: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2) 참여자 : 만 60세 이상의 미취업자 (1965년생 및 이전 출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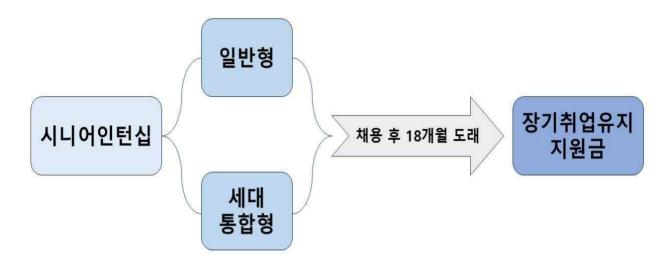
○ 참여기업 제한요건

- 1)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 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2)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 3)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지원받는 기업
-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 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 ※ 고령자 고용지원금,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등 기금 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지원금 산정기간이 중복될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가능
- 4)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 5)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참여자 제한요건

- 1)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2) 타 사업장에 4대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 3) 채용기업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 4) 90일 이내 동일 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자 (일용직의 경우 30일 이내)
- 5) 경비·미화·요양보호사 등의 직종 신청불가 (참여 제외 직종 별첨)

2 세부사업



2-1 지원내용

구 분	기업 지원금	지원내용	
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기업에 지원	인턴 지원금 (120만원)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월 급여의 50%, 월 40만원 한도 지원 * 9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및 인턴기간 3개월 지정
		채용 지원금 (150만원)	인턴종료 후 3개월 간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월 급여의 50%, 월 50만원 한도 지원
세대 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원 기업에 지원	세대통합형 지원금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참여자 급여 지급 합계 300만원 초과시 300만원 일괄 지급
장기취업 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기업에 지원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일반형 사업 참여자가 근무시작일로부터 18개월 (80만원) · 24개월 (80만원) ·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도달 시 지원금 지급 (총 4회)

○ 제출서류: ※ 참여 구분별 별도 안내

○ 문의 및 접수처:

- 진천상공회의소 류주현 주임 (Tel. 043 - 537 - 5900) Fax. 043 - 537 - 5905, E-mail. 5375900@naver.com